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94

발의연월일: 2021. 5. 4.

발 의 자:이원택·소병훈·이상헌

김승원 • 정성호 • 서영교

신정훈 · 남인순 · 이학영

김윤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.

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 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%, 2020년 45%로 여전히 50%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하여 2018년 기준 사과(68%), 배(60%) 및 벼(37%) 등 특정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 적 높은 반면, 차(9.3%), 고추(5.9%), 포도(5.3%), 버섯(3%) 등 대다수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1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덧붙여 최근 들어 이상고온, 이상저온, 홍수, 가뭄, 한파, 폭설,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,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 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가입률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.

이에 장기적·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(이하 "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
- 2. 농어업재해보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
- 3.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대상 및 면적 확대에 관한 사항
- 4.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재해보험사업 발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

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	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
	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
	<u>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</u>
	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
	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보험사
	업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
	<u>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</u>
	<u>하여야 한다.</u>
	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
	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	1.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발전
	<u>방향 및 목표</u>
	2. 농어업재해보험 종류별 가입
	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
	3.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대상
	및 면적 확대에 관한 사항
	4.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대한
	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	5.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활
	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
	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	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재해보험사업 발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 우에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.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(심의회) ① 이 법에 따른 제3조(심의회) ① -----

농어업재해보험(이하 "재해보 험"이라 한다)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(이하 "재보험"이라 한 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 보험심의회를 두고,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 의회를 둔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· 8. (생략) ② ~ ⑧ (생략)

1. ~ 6. (현행과 같음)	
6의2.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	
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	
사항	
7. • 8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⑧ (현행과 같음)	